

1. 개정이유

2026. 10. 2.부터 공소청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) 및 개정 형사소송법(법률 제21857호, 2026. 8. 4. 공포)이 시행됨에 따라, 「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사용되는 기관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,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·추가·비치 및 등재 사실 통지 등 관련 권한자의 명칭을 "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" 및 "지방검찰청 지청장(이하 "지청장"이라 한다)"에서 각각 "지방공소청장(이하 "공소청장"이라 한다)" 및 "지방공소청 지청장(이하 "지청장"이라 한다)"으로 변경하고, 이후 조항에서 사용되는 약칭 "검사장"을 "공소청장"으로 전면 변경함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의 6, 제8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의2, 제24조).

나. "지방검찰청" 및 "검찰청"을 각각 "지방공소청" 및 "공소청"으로 변경함(안 제4조, 제6조, 제8조)

다. "조사"를 "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"로 변경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상의 용어에 맞게 정비함(안 제9조, 제12조의2, 제18조).

라. 기관 명칭 및 피해자에 대한 절차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소청범, 형사소송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(이하 “지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이하 “공소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(이하 “지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, “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은”을 “지방공소청은”으로, “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공소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검사장”을 “공소청장”으로,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6 중 “검사장”을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공소청장”으로,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호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검사장”을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사장”을 각각 “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(○○지방검찰청)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(○○지방공소청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1항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2항 중 “조사”를 “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○○지방검찰청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)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“검사장”이라 한다)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(이하 “지청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(登載)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(이하 “국선변호사명부”라 한다)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	제4조(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) ① 지방공소청장(이하 “공소청장”-----지방공소청 지청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(이하 “지청”이라 한다)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 제1호에 따른 변호사(이하 “변호사”라 한다)	1. -----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,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	② ----- 지방공소청----- 지방공소청 지청-----.

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,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(이하 “공익법무관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,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.

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,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

-- 지방공소청----- 지방공소청 지청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공소청장 -----

-----.

④ 공소청장 -----

-----.

⑤ 공소청장 -----

----- 지
방공소청 -----

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) 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

제6조(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)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7조의6(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)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·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을 관할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선변호사 선정) ①·②

-----.

제5조(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) ① 공소청장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공소청장 -----

-----.

제6조(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) 공소청장 -----

-- 지방공소청 -----
-----.

제7조의6(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) -----

--- 공소청장 -----
-----.

제8조(국선변호사 선정) ①·②

(생 략)

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, 아동학대 또는 강력 전담검사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전담하는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9조(국선변호사 선정 고지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2조의2(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,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

(현행과 같음)

③ 공소청장 -----
----- 공소청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국선변호사 선정 고지) ① ----- 사실
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 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) ① -----
-----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사실관계
확인, 면담 -----

관한 규정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제18조(지급 대상)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. 1. (생략) 2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<u>피해자 조사</u> 참여 3. ~ 10. (생략) 제20조(보수등의 기준) ① ~ ④ (생략) ⑤ <u>검사장</u>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. 제21조(보수등의 지급) ① 국선변호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	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18조(지급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피해자 사실관계 확인, 면담 또는 조사</u> ----- 3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20조(보수등의 기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공소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1조(보수등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

첨부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
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
한다.

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
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
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
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
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
한다. 다만, 예산의 부족 등 부
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
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
하지 아니하다.

제22조의2(평가서의 작성 등) ①
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
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
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
가서(이하 “평가서”라 한다)를
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
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
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
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
다.

제24조(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
한 통보 등) ①법무부장관은 다

----- 공소청장 -----

---.

② 공소청장 -----

---. -----

-----.

제22조의2(평가서의 작성 등) ①

----- 공소청장 -----
-----.

② 공소청장 -----

---.

제24조(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
한 통보 등) ①-----

음 각 호의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, 소속 지방 변호사회의 장,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,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(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제3항에 따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국선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국선변호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

②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선변호사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----- 공소청장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공소청장 -----

② 공소청장 -----

-----.

③ 공소청장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